

2024년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공고

서울특별시 중구에서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「2024년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」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시설 및 단체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4. 4. 16.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1. 사업 개요

가. 사업명: 2024년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

나. 공모기간: 2024. 4. 16.(화) ~ 2024. 5. 2.(목)

다. 사업기간: 2024. 4. ~ 12.

라. 사업대상: 「장애인등편의법」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편의시설
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시설

※ 예: 음식점, 휴게음식점(편의점, 커피전문점), 소매점, 제과점, 약국, 의원,
서점 중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시설

마. 사업내용

- 관내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현황 및 설치수요 조사
-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의 경사로 설치 지원 및 관리
-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홍보 및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

바. 지원예산: 20,000천원(금이천만원)

2. 신청자격(공고일 기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및 단체)

가. 자격기준

장애인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치·운영 중인 시설 및 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시설 또는 단체(비영리 민간단체, 법인)

-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 및 단체(비영리 민간단체, 법인)
- 최근 1년 이상 장애인 관련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시설 또는 단체
-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지식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

나. 제외대상

- 특정 정당 관련 사업,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
- 특정 제품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인,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
-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
-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(기금포함)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

3. 추진일정

사업 공모 공고·접수	제출 사업 심사 및 선정	최종 선정자 통보 및 협약 체결	사업수행	사업 평가 및 산정
4. 16. ~ 5. 2.	5월 중	5월 중	6. ~ 12.	12.
어르신장애인지도과	어르신장애인지도과 기획조정과	어르신장애인지도과 보조사업자	보조사업자	보조사업자 어르신장애인지도과

4. 신청방법

가. 신청기간: 2024. 4. 16.(화) ~ 5. 2.(목) 09:00 ~ 18:00

나. 신청방법: 방문, 이메일(공문) 접수 중 택1(방문 접수의 경우 근무시간 내)

- 방문 접수: 중구청 어르신장애인지도과 장애인복지팀(창경궁로 17, 1층)
- 이메일 접수: nicky45@junggu.seoul.kr
- 연락처: ☎ 02)3396-5374

다. 제출서류: 중구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

- 세부 서류는 최종 선정된 보조사업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

※ 신청서식은 중구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중구소식-고시공고란에 게시

5. 심사기준 및 방법

- 가. 심사기준 : 사업계획의 적정성, 사업수행능력, 장애인관련 활동 실적 등 고려
- 나. 심사방법 : 서류 심사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

6. 보조금 지원범위 및 교부 관련

- 가. 지원범위: 사업비(경사로 제작·설치, 홍보, 현장 조사 등)
 - ※ 관련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¹⁾ 사용 불가

나. 관련 사항

- 회계연도 종료일(2024. 12. 31.)이후는 보조금 집행 불가
- 최종 사업자 선정 시 보조금 청렴사용 서약서 작성 후 보조금 지원됨
-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 정산을 완료해야 함
-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일정에 따라 일정 조정될 수 있음

7. 기타 안내 사항

- 가. 접수된 서류는 보조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, 사업계획서 등의 평가 및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
- 나. 접수 이후 제출된 신청서(사업계획서 등)의 내용은 중구와의 협의 없이 변경 할 수 없으며, 협약 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
- 다.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혹은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사용한 경우, 관련 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됨
- 라. 보조사업자 선정 후 사업비 집행 시,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보조금 전용카드(우리신용카드)를 의무 사용해야 함
- 마. 보조사업자의 선증빙 건별 집행방식(원칙:예치형)
- 바. 보조사업 신청,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집행, 실적보고서 작성 및 보조사업 정산 등은 보탬e 시스템 사용할 것.

8. 문의: 중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☎ 02)3396-5374

1) 사무실 임차료, 공과금, 사무관리비, 상근 직원 인건비 등 단체 운영비 성격의 비용